

-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[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사업]

2025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공원녹지과]

# 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공원녹지과장

한실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「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-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, 노후된 도원도서관을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한실공원 내 부지로 확장 이전하여 독서문화 및 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달서구 거점 숲교육시설로 조성하고,
  -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일환으로 목조 건축물로 신축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  
- 다음은 건립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  - 총사업비는 13,000백만원으로,
    - 건축비로는 공사비 10,718백만원, 설계비는 569백만원, 감리비 1,034백만원, 인증관련 수수료 등의 기타 항목이 67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(계획 수립)부터 2027년 12월(완공)까지이며,
- 주요 시설은 어린이 서가, 열람 영역, 일반 서가, 업무 관리공간이며 층별 세부 시설 구성은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.
- 재원확보 계획(안)은 총 130억 사업비 중 국비 65억, 시비 15억, 구비 12.5억, 특교세 20억, 특교금 17.5억원(기 확보 국비 2.5억, 시비 2.5억, 구비 2.5억원)이며 계획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#### 향후계획으로는

- 현재 건축설계공모 접수 중으로, 올해 12월 당선작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, 20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.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실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0092513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11. 14.  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공원녹지과장)

## 1. 제안이유

- 한실공원 내 숲속도서관 목조건축 건립을 통하여 교육 환경 및 주민 편의를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건립개요

- 위치: 달서구 대곡동 1088번지 일원
- 규모: 부지면적 91,198.5㎡, 연면적 2,330㎡정도
- 사업기간: 2024. 10. ~ 2027. 12월
- 사업비: 총 13,000백만원정도
- 사업비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계	부지 매입비	건축비				
		계	공사비	설계비	감리비	기타
13,000	-	13,000	10,718	569	1,034	679

### 나. 취득대상 현황

종류	위치 (지번)	지목	면적(㎡)	사업비 (백만원)	비고
건물	대곡동 1088	공원	연면적 2,330	13,000	취득

※ 토지 현황: 면적 91,198.5㎡/ 대구시 소유

## 다. 재원확보(안)

○ 특별교부세·교부금 최대확보 및 구비 조달

(단위: 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연도별 확보계획(안)				비고
		기확보		향후계획		
	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
계	13,000	500	500	6,000	6,000	
국비	6,500	250	250	3,000	3,000	
시비	1,500	-	250	1,250	-	
특별교부세	2,000	-	-	-	2,000	
특별교부금	1,750	-	-	1,750	-	
구비	1,250	250	-	-	1,000	

☞ 재원별 확보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## 라. 추진경과

- 2024. 10월: 사업계획 수립
- 2025. 1월 ~ 4월: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업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
- 2025. 2월 ~ 10월: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업사업 건축기획 용역
- 2025. 5월 ~ 6월: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
- 2025. 8월 ~ 9월: 공공건축 심의

## 마. 향후계획

- 2025. 12월: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
- 2025. 12월 ~ 2026. 9월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- 2025. 12월 ~ 3월: 공원조성계획 변경, 市 공유재산심의(무상사용 승인)
- 2026. 10월: 공사착공

### 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- 붙임 1.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.  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.  
3. 관련 법규 1부.

##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백만원)

구 분			2025~2027년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 (면적)	금액	건수	수량 (면적)	금액	
취 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2,330	13,000	1	2,330	13,000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
	3. 기타취득 (용도변경)	토지 건물 기타							
	4. 기타취득 (신축)	토지 건물 기타	1	2,330	13,000	1	2,330	13,000	

##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: m<sup>2</sup>, 백만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
	구분	소재지	수량 (면적)				
1	건물	대곡동 1088	2,330	13,000	2027년	한실 숲속도서관 신축	○ 총 사업비: 13,000 - 건축비: 10,718 - 설계비: 569 - 감리비: 1,034 - 기 타: 679



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38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

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**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

## □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**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**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회계연도 중에 **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** 긴급하게 **공유재산을**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15. 12. 31., 2022. 9. 21., 2022. 12. 12.)

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**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**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. (신설 2022. 12. 12.)

1. **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** 재산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